|  |
| --- |
| 사 업 명 |
| 혁신창업사업화자금(융자) (5152-301) |

1. 사업 코드 정보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구분 | 기금 | 소관 | 실국(기관) | 계정 | 분야 | 부문 |
| 코드 | 중소벤처기업  창업 및 진흥기금 | 중소벤처기업부 | 중소기업정책실 |  | 110 | 118 |
| 명칭 | 산업·중소기업 및 에너지 | |  |  | | --- | --- | |  | 창업 및 벤처 | |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구분 | 프로그램 | 단위사업 | 세부사업 |
| 코드 | 5100 | 5152 | 301 |
| 명칭 | 창업환경조성 | 창업기업지원융자(기금) | 혁신창업사업화자금(융자) |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직접 | 출자 | 출연 | 보조 | 융자 | 국고보조율(%) | 융자율 (%) |
|  |  |  | ○ | ○ |  |  |

3. 지출계획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사업명 | 2022년 결산 | 2023년 | | 2024년 | 증감 |  |
| 당초(A) | 수정 | 확정(B) | (B-A) | (B-A)/ A |
| 혁신창업사업화자  금(융자) | 2,300,000 | 2,230,000 | 2,330,000 | 2,007,800 | △222,200 | △9.96 |

4. 사업목적

ㅇ (창업기반지원)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

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

ㅇ (개발기술사업화)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

제품화·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ㅇ 법령상 근거 :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, 제67조, 제74조
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

ㅇ 추진경위

- 1998. 4 외환위기 이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원 시작

- 2005. 2 업체별 연간 대출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(기존 10억원)

- 2006.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(기존 3년미만)

- 2008. 1 부채비율 예외적용 기업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(기존 3년 미만)

- 2009. 1 지원대상을 업력 7년 미만까지 확대(기존 5년 미만)

- 2010. 3 재창업자금(실패 경영인에 대한 재기지원) 신규 지원

- 2012.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 미만으로 축소(기존 7년 미만)

청년전용창업자금(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대상) 신규 지원

- 2014.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(청년전용창업자금, 재창업자금)

- 2014. 1 지원대상 업력기준을 7년 미만으로 확대

- 2015. 1 재창업자금을 재도약지원자금(융자)의 내역사업으로 이관

- 2019.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

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

- 2020. 1 미래기술육성자금,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

- 2022.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

- 2023. 1 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폐지

- 2023.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(혁신창업사업화자금)

< 국정과제 >

|  |
| --- |
| < 국정목표 2.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>  6. 중소·벤처기업이 경제의중심에 서는 나라  ◾(31번)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(중기부)  - (금융·수출·판로 패키지)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,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,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◾(32번)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 -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|

6. 주요내용

ㅇ총사업비 : 해당없음

ㅇ 사업기간 : ’98년~ 계속

ㅇ 사업규모: ‘24년 2조 78억원

ㅇ 사업시행방법 : 융자, 보조



ㅇ 사업시행주체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
ㅇ 사업 수혜자 : 중소기업  
ㅇ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내역사업명 | 구분 | 피보조․피출연등 기관명 | 지원 금액  (2024 계획안) | 지원 비율(%) | 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 |
| 창업기반지원 | 융자 | 중소기업 | 1조 7,958억원 | 정책자금기준금리△0.3%p |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, 제66조, 제67조, 제74조 |
| 개발기술사업화 | 융자 +보조 | 중소기업 | 2,120억원 | (융자)정책자금기준금리 (이차보전) 최대 5.5% 이내 |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, 제66조, 제67조, 제74조 |

7. 사업 집행절차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|  | | --- | | 사업계획수립/공고(중기부, 중진공) | | ⇨사전상담 및 신청‧접수   |  | | --- | | (중소기업 →중진공) | | ⇨ | |  | | --- | | 서류 및 현장실사(중진공 →중소기업) | |

⇩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|  | | --- | | 융자 실행 |   (중진공, 은행 →중소기업)⇦ | |  | | --- | | 지원결정통보 (중진공 →중소기업) | | ⇦ | |  | | --- | | 평가 및 승인 (중진공 →중소기업) | |